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 의 명 :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1. 3.(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1-48-15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주식회사 셀리턴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주)엠비엔미디어렙의 주식을 소유한 (주)셀리턴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의한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21년 5월~7월 중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6개사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주)셀리턴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8월 20일~9월 3일 중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접수를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방송광고대행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위반사항입니다. 2020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6개사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주)엠비엔미디어렙의 주주 (주)셀리턴의 특수관계자 (유)셀리턴 리치플랫폼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셀리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방안입니다. 피심인 의견은 고의적인 법 위반 의도는 없었으며, 위반 주식의 처분을 위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으나 해당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 처분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에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내년 5월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주)셀리턴이 MBN 주식을 팔겠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이 비상장 주식이어서 시장에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도 받아서 잘 안 팔리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난번에 네이버도 이런 일이 있어서 네이버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소가 된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해당되어서 지분비율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했고 12월까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사실은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유)셀리턴리치플랫폼이 광고대행 업무 중에서 방송광고대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되는데, 현재는 (주)셀리턴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방송광고대행을 접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면 처리방안 참고표에 있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런 처리는 행정청으로서 어쩔 수 없는 처리인데 기본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인데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많이 변해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시장변화에 맞는 것을 사무처가 고민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광고대행사 및 특수관계자의 미디어렙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주)셀리던에 대한 행정처분 건입니다. 방통위가 피심인의 법 위반사실을 인지해서 지난 8월에 사전통지를 했습니다만 비상장 주식 처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심인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준만큼 6개월 이내에 차질 없이 이행하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피심인의 주장처럼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해당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법 위반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같은 소유제한 규정이 미디어 산업 발전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시정명령(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피심인의 의견제출서를 보면 '10월 말까지 해당 주식의 양수인을 찾아 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은 파악되었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11월 말일까지 양수인을 찾아 처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10월

말이면….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10월 말까지 어려워서 저희가 그 전에 안건을 작성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양수인을 찾아 처분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통해 처분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통지를 했던 것이고, 사전통지 이후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나가게 되는데 '10월까지는 할 테니'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10월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이번에 의결하는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방통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진행이 안 되어서 시정명령한다는 것이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아니지요. 이것을 작성한 것은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시정에 대한 명령서가 나오기 전에 10월에 처분하겠다고 우리에게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늘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 정리된 것은,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 10월 며칠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10월 중에 보고드렸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시점상으로는 10월까지 처분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오늘 회의는 그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어쨌든 오늘 회의가 잡혀진 것을 알고 10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회의 일정은 사업자 처분상태를 점검해서 저희가 잡았고, 오늘 의결해 주시면 내년 5월까지 처분하는 것으로….

○ 김 현 부위원장

-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명령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비상장 주식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은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리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MBN이 거짓으로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방통위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MBN과 관련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방송사가 제대로 못 해서 시정명령하는 기간을 둘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망 속에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적용은 되겠지만 엄격하게 MBN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은 수법자가 (주)셀리턴이라는 회사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그래도 MBN과 관련된 것인니까요.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합시다. 향후 6개월 내에 하는 것은 이것이 시정명령 나가기 전에 그쪽에 처분 의견을 묻고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주문에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 하나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사실 어떤 형태로 시정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판단하는 문제이고 경영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정 행위로 할 것을 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유사 안건에서도 저희가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을 명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마치 문제를 문제로 답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방송광고대행업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수범자가 해야 할 행위를 명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를 들어 주식 처분행위는 위반행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주식 처분행위를 하면 되는데 정관변경을 하면 방송광고대행업을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앞에 위반행위를 포기하더라도 이전에 방송광고대행업을 포기하는데 그러면 앞에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분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정관을 변경해서 포기하더라도 이전에 방송광고대행업을 한 행위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분은 없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요.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사유는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경과입니다. 2006년 ~2019년까지 KBS는 51개 AM 방송국·방송보조국을 단계적으로 폐업한 바 있으며, 2019년 방통위는 26개 AM방송국에 대해 전파법상 허가출력 준수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20년 KBS순천, MBC충북, 대구MBC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AM방송국을 휴지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KBS·MBC·SBS는 ‘AM 효율화에 대한 입장’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 내용은 대출력 AM 이외에는 자율 폐소 권한 부여와 유지예정인 AM은 운용출력 저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송사업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올해 3월~5월까지 AM 방송구역 대상 AM 송출 중단 시 표준FM 난청 여부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자체 실측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가 비상대비 계획 운영방침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행안부, 국정원, 국방부, KBS)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 방송매체에 FM라디오를 포함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올 8월부터는 방송사업자의 AM 방송구역 실측 결과에 대해 방통위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붙임>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M라디오와 표준 FM라디오 기능조정 방안(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AM라디오는 1927년 시작된 이래로 보편적 청취매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주파수 혼신 및 잡음이 취약하여 1981년부터 표준FM이 도입되면서 청취자들이 음질이 좋은 FM을 선호하면서 표준FM이 AM를 대체 중에 있습니다. AM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사는 대부분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재투자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AM 방송 송출 중단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AM라디오와 표준FM라디오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지상파재허가 심사위원회는 AM에 대한 단계적 폐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2020년 7월 지상파라디오진흥자문위원회는 「라디오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AM과 표준FM 역할 재설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AM라디오 방송 현황입니다. 해외 AM라디오 방송 현황입니다. 미국은 “AM라디오 서비스 재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작년 10월 기준 4,593개 AM 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국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영방송 일부 로컬 AM 폐쇄, 상업방송 일부 AM 감축·폐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독일 프랑스는 재정적 이유 등으로 2015년 전국 AM을 정파하고 FM, DAB+, 온라인 전송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8년까지 AM의 FM 전환 또는 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AM라디오 방송 현황입니다. 총 21개 방송사업자가 55개 방송국·방송보조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환경 변화로 방송사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인 가운데, 최근 3년간 AM 송신소 운영비·개보수비로 연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AM라디오 방송의 문제점입니다. AM라디오의 청취수요 감소입니다.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방송의

라디오 이용률이 지속 하락하며, 특히 AM은 지형과 전파 특성상 고음질 방송이 어려워 청취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AM 대신 고음질 방송을 깨끗하게 청취 할 수 있고 AM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표준FM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M라디오를 중심으로 보편적 청취매체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되, AM라디오의 경우 대안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AM라디오의 유지·재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AM은 표준FM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 AM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전체 표준FM 방송국 운영비에 상응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투자 시 재투자 이후 5년간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나 청취율이 저조하여 투자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M라디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방송사의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감축하여 경영개선에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AM라디오 기능조정 추진방향입니다.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AM라디오의 기능을 재조정하되, 전시·재난 방송은 AM라디오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AM라디오 기능 재조정은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AM라디오의 송출 중단 등 기능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AM라디오의 고유한 역할 강화는 국가기간방송인 KBS AM라디오의 전국 방송망 확보를 통해 전시·안보 및 재난매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겠습니다. KBS 전국 방송망 확보 방안은 1단계로 KBS 1, 2라디오는 현행 유지하되 타 방송사의 AM 방송국의 기능조정을 하고, 2단계로 KBS AM 중 유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방송국 기능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접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방송인 KBS 한민족방송과 극동방송,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방송인 KBS 사랑의 소리 방송 등은 정책적으로 운영 유지를 하고, 표준FM은 원칙적으로 AM 프로그램을 중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AM이 표준FM과 별도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AM라디오 기능조정 추진방안입니다. 개요입니다. AM 방송구역 내에서 표준FM 청취가 가능한 경우 해당 AM방송국 송출을 중단하며, 허가증 및 방송구역도상 AM과 표준FM 방송구역을 비교하여 AM 수신권역 내 표준FM 난청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신환경 검토작업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실측 대상 사업자 선정입니다. 폐업 검토 대상인 25개 AM방송국 중 표준AM과 AM 방송구역이 유사한 MBC경남, 안동MBC, CBS대구 등 3개는 실측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방송국은 표준FM과 AM 방송구역이 다르고, AM 송출 중단 시 표준FM 난청 가능성이 있어 실측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실측은 방송사업자가 실측을 하고 방통위가 검증을 하겠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차량용 라디오를 이용하여 방송국당 100개 내외의 지점을 측정하고, 방통위는 실측 지점의 15% 내외 지점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표준FM 양청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AM보다 표준FM 양청비중이 더 큰 경우, 표준FM이 양청이 아니라 해도 대체 표준FM 커버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표준FM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표준FM으로 대체가능한 방송국은 우선 휴지 이후 송출 중단을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측정 및 수신환경 개선을 선행한 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방송사업자는 앞서 경과에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2개 AM방송국 및 53개 표준FM방송국 방송구역 중 155개 지역 4,574개 지점을 대상으로 방송구역 양청 여부 실측을 하였습니다. 실측 결과, 허가증 및 방송구역도상 표준FM 난청 가능성 있는 지역임에도 표준FM 양청비율이 AM 양청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AM 양청비율이 표준FM보다 높은 지역은 155개 측정 지역 중 4개 지역이나, 4개 지역 중 3개 지역에서 대체 표준FM이 100% 양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대구MBC, MBC충북 등 2개 방송국 실측 지점의 15~20%를 검증한 결과, 모두 표준FM 양청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측 대상에서 제외된 3개 방송국 및 실측 지역 검증 결과 난청이 아니라고 판단된 2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송출 중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MBC경남(진주), 안동MBC, CBS대구 AM 방송국은 6개월 휴지 후 송출 중단하고, 대구MBC, MBC충북(충주) AM 방송국은 1년 이상 휴지 중임에 따라 그간의 민원 경과 검토 후 송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순차적 검증을 통해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 여부 판단 후 송출 중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AM라디오 가능조정 관련 변경허가 사항 등입니다. AM 송출 중단에 따라 AM 중파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해온 표준FM의 방송국명 및 방송사항 변경이 필요합니다. 방송사항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표준FM방송국의 방송사항을 AM방송국의 방송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대구MBC표준FM방송국의 방송사항이 기존에 대구문화AM방송국방송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을 AM 방송국의 방송사항과 같이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방송국명이 기존 무슨무슨 표준FM방송국에서 '표준'이라는 말을 삭제할 경우 표준FM과 음악FM의 방송국명이 동일하게 되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대구MBC의 표준FM 이름이 대구MBC표준FM방송국인데 '표준'을 삭제하면 음악FM방송과 이름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AM방송국이 표준FM방송국의 모 방송국임을 감안해서 AM방송국이 폐쇄되는 경우 표준FM방송국을 제1FM, 음악FM방송국을 제2FM방송국명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경우 허가증 사항의 이름을 방통위가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고 방송사들이 채널 브랜드 명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령 MBC가 음악FM 브랜드명이 FM4U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허가증상에 방통위가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후 11월 초에 MBC경남(진주), 안동MBC, CBS대구 등 3개 방송국은 휴지하고, 대구MBC, MBC충북(충주) 등 2개 방송국은 폐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방송사업자 대상 실측 지역 검증 진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6페이지에 보면 AM 양청비율과 관련된 <표>가 있는데 여수MBC가 MBC를 듣던 통영시가 AM 양청비율이 12%이고 표준FM은 8% 인데 여기에는 MBC경남이 100% 잘 들린다는 이야기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가령 목포MBC도 광주MBC가 다 커버가 된다, AM이 정파되어도 다 커버가 된다는 뜻의 <표>를 예시한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나주시 지역인데 나주 지역의 AM 특성상 목포MBC에서 송출하는 AM도 들렸고 광주MBC에서 송출하는 표준FM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보면 통영시가 여수MBC를 그동안 듣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2개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영 같은 경우 그동안 여수MBC를 듣던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면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역상을 봤을 때 경남MBC를 듣게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요점은 지역별로 방송국의 내용, 콘텐츠가 다를 텐데 가령 통영이 경남MBC, 순천이 여수MBC를 들어도 들리는 것은 잘 들리는데 내용 면에서 헷갈리는 면은 없습니까? 그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이유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MBC도 여수시에서 제주MBC를 그동안 들었는데 AM을 정파해도 여수MBC가 다 들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 말씀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렇지요. 2개를 듣고 있었는데 하나를 중단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역이 가까운 지역MBC는 오히려 100% 커버하니까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런 경우에는 멀리서 송출한 것이 바다를 건너 들리던 부분은 예를 들어 여수에 계시는 분이 그동안 제주MBC의 AM을 들어왔었는데 제주MBC가 AM을 중단하더라도 그분들은 여수 MBC의 FM방송이 100% 잘 들리기 때문에….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AM라디오가 페이드아웃(fade-out)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정책 방향은 올바른데, 그동안 AM라디오에 익숙한, 특히 농촌 어른들이 이 방송을 주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정책을 바꾸고 옮기는 과정에서 잘 알리는 것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휴지 기간 중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내년되면 우리나라 AM라디오 방송이 95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근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AM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서 AM라디오 방송 기능 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AM과 표준FM의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을 이번에 잘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AM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주시고, 또 폐업 검토대상 25개 AM 방송국 중에서 5개 AM 방송국의 휴·폐지 추진과 함께 20개 AM 방송국의 표준FM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2006년부터 2019년까지 KBS가 51개 AM 방송국, 방송보조국을 단계적으로 폐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국을 했는데 KBS AM의 전국방송망 확보가 가능할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 KBS 전국 방송망 확보 방안 제1단계에서 KBS 제1, 2라디오는 혼행을 유지하되 타 방송사의 AM 방송국 기능조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KBS는 유지하는데 타 방송사의 AM방송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이 기능조정이 특히 걸리는 말 같은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BS가 단계적으로 폐국을 한 것은 방송국 3개와 보조국이 48개였습니다. 보조국을 중심으로 AM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AM망을 확보하고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국 폐쇄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방송국은 충주제2AM과 울릉, 창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그동안 3개가 폐국이 되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다른 데서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앞서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휴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BC라든지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에 대한 기능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KBS에 대해서….

○ 안형환 상임위원

- 기능이라는 것이 커버리지를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이라면 방송 내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KBS는 나름대로 AM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KBS와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타 방송사에 대한 기능조정을 먼저 하고 KBS가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수 부분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저희 방통위와 단계적으로 2단계에 가서 고민하고 정책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능조정이 단순히 표준FM의 대체 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AM라디오의 전시·재난방송에 특화된 고유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보완 설명드리면 KBS가 그동안 폐업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더 꿈꿨하게 질서 있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망을 새로 구성할 때 일부는 오히려 새롭게 복원해야 할 것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 큰 지역인데 폐업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되어서, 전체 망을 보고 일부는 다시 복원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니까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KBS1라디오, 2라디오까지 같이 하는데 비상용 같으면 1라디오, 2라디오 역할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국 부분도 대부분 폐업을 했는데 보조국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원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러니까 AM라디오 전시·재난방송 특화된 KBS의 기능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KBS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망 비상시에 혹은 재난방송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다시 좀 더 면밀하게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AM과 표준FM 기능조정 방안 관련해서 AM 특성상 평시보다는 재난 등 비상상황이나 특수 상황에서 유용성이 강조되는 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본연의 의무가 등한히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AM 종료로 인한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능조정으로 절감되는 운영비 개보수비가 라디오방송의 진흥과 혁신 부분으로 환류되어 청취권 약화가 아닌 라디오방송 재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타

○ 한상혁 위원장

- 아까 <의결안건 가> 이야기할 때 제가 주문 관련해서 구체성을 띠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까는 주문 수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려면 수정 의결해야 합니다. 주문 수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는 수정 의결을 하고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정도 의결을 해야 하는데 다음번부터 적용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 의결하고 주문의 구체성,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주)셀리턴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 처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이 어떤지….

○ 김효재 상임위원

- 구체화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위반 행위를 해소하라, 위반 쪽 나갔다는 것이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지금까지 법률만 규정하고 앞부분 구체적인 내용 빼고 법률 몇 호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만 나갔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처분의 주문이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의미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김현 부위원장

-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혁 위원장

- 그것은 당연하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할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적시해서 명령하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냥 원안대로 해도 당장 의미상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 향후로라도 이것이 지정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적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대체안은 없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은 향후로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의결하려면 원안 의결하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고, 아니면 주문 수정을 하겠다는 의결을 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정도로 다시 수정 의결하면 그렇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오늘은 원안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주문 변경을 의안으로 올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아까 <1안> 의결한 것을 그렇게 수정 의결하면 되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오늘은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김현부 위원장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사들 안에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하지는 않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 상으로 2021년도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1분 폐회 】